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제도 안내

'22. 12. 30. 법무부 체류관리과

## I.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기간) 1년 (2022. 10. 4. ~ 2023. 10. 3.)

※ 단, 추가 공모 시범지역은 9개월 (2023. 1. 1. ~ 2023. 10. 3.)

○ (대상 지자체) 10개 (광역 6, 기초 4 / 시범사업 지역 28개\*)

\* 유형1(지역 우수인재) 시범지역은 26개, 유형 2(동포 가족) 시범지역은 27개임

연번	1차 공모 시범지역(15개)		추가 공모 시범지역(13개)	
	지자체명	시범사업 지역	지자체명	시범사업 지역
1	-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영도구
2	-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
3	충청남도	보령시(유형1만), 예산군		
4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5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군, 강진군(유형2만), 장흥군(유형2만)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6	경상북도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경상북도	성주군
7	-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
8	-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9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	
1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	-	

○ (시범지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연번	지자체명	시범지역 (기초 지자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1	부산광역시	(유형1,2)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 출입국
2	충청북도	(유형1,2) 단양군, 제천시	청주 출입국

연번	지자체명	시범지역 (기초 지자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3	충청남도	(유형1) 보령시, 예산군 (유형2) 예산군	대전 출입국(보령시) 천안 출장소(예산군)
4	전라북도	(유형1,2)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전주 출입국
5	전라남도	(유형1)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보성군 (유형2)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고흥군, 보성군	광주 출입국(강진군, 장흥군, 고흥군, 보성군) 목포 출장소(영암군, 해남군)
6	경상북도	(유형1,2)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성주군	대구 출입국
7	대구광역시 남구	(유형1,2) 남구	대구 출입국
8	경기도 가평군	(유형1,2) 가평군	춘천 출입국
9	경기도 연천군	(유형1,2) 연천군	양주 출입국
10	경상남도 고성군	(유형1,2) 고성군	창원 출입국

## II.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연장

### 1. 체류자격변경 대상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이하 “고시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 원 칙

- (2년 실거주자) 시범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
- (국내 전입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군 단위 기초지자체는 제외)에 거주<sup>1)</sup>하다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 공고일(2022. 9. 5.) 이후 시범 지역으로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sup>2)</sup>)과 동반 이주<sup>3)</sup>한 60세 미만<sup>4)</sup> 동포
- (해외 전입자) 2인 이상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sup>2)</sup>) 단위로 신규 입국<sup>5)</sup>하여 시범지역에 거주하려는 60세 미만<sup>4)</sup> 동포

- 1)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군 단위 지자체나 시범지역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님
  - 2) 동반 이주 요건의 가족 중 자녀는 성년도 가능
  - 3)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일 전에 2인 이상 가족이 시범지역의 동일 체류지로 전입(체류지 변경) 하였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 같은 날짜에 동시 전입이 아닌 순차 전입도 가능
  - 4)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는 동포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그의 배우자로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은 60세 이상이어도 가능
  - 5) 신규 입국은 장기체류 사증으로 입국하였으나 외국인등록 전이거나 단기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경우
- ※ “2년 실거주자”는 동포 1인 가구도 가능, “국내 전입자”와 “해외 전입자”는 동포를 포함한 2인 이상 가구만 가능

## 나. 예 외

- 국내 전입자와 해외 전입자로 구성된 2인 이상 가구나 2년 미만 실거주자와 국내 또는 해외 전입자로 구성된 2인 이상 가구의 동포도 국내 전입자 또는 해외 전입자로 간주하여 인정

## 다. 학령기 아동·청소년 동포 추가요건

- 만 6세 ~ 18세 동포는 주소지(시범지역)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인구감소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가능하며, 그 외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가족(F-1) 체류자격으로만 변경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

-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통해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이 확인되는 사람은 예외로 함

## 2. 제출 서류

-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 증명서 등 재학·입학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만 6~18세만 해당),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재외 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붙임3), 수수료

○ 동포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세부기준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법령지침정보’ -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체류/사증’의 ‘알기 쉬운 동포업무 매뉴얼’ 참고

○ 실거주 입증서류(2년 실거주자)

○ 동반가족이 있는 사람\*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붙임1), 동반 전입한 가족의 여권·사본, 전입 입증서류 및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 ① 국내 전입자, ② 해외 전입자, ③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가족(F-1)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3. 허가 기준

○ (허가조건) ‘체류자격 변경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동일 시범지역에 실거주하되, “국내 전입자”와 “해외 전입자”는 2인 이상 동반가족이 실거주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先 체류자격 변경허가

○ (체류자격)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 (체류기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시 1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1년,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재외동포(F-4) 체류기간 부여기준에 따라 3년 이내에서 부여

○ (연장허가) 동일 시범지역에 계속하여 실거주 여부 및 2인 이상 동반가족 실거주 여부(국내·외 전입자)를 확인하여 허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실거주’ 인정기준 】

소득활동이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은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학교 미취학자는 ①만 충족하면 됨

① (체류지·거소) 동일한 인구감소지역(시범지역) 지자체에 체류지(거소)를 두어야 함

② (소득활동, 재학) 체류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하여야 함

▶ 체류지는 시범지역 중 동일지역이어야 하나, 소득활동\*이나 재학은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인구감소지역 어디라도 가능

\* ‘소득활동’은 사업 및 취업활동 등 소득이 창출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 III.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의 가족(F-1) 체류자격 변경·연장

### 1. 체류자격변경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미성년자녀는 동포이므로 재외동포(F-4)로도 자격변경 신청 가능

### 2. 제출 서류

○ 여권 및 사본 1부,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입증서류(만 6~18세만 해당), 수수료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붙임1), 주 체류자격자(F-4)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3. 허가 기준

○ (체류자격)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가족(F-1)

○ (체류기간) 주 체류자격자(F-4)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 그 외 기준은 일반적인 재외동포 배우자(F-1) 체류자격 변경 허가 기준 준용

## IV.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영주(F-5-6) 체류자격 변경

### 1. 대 상

- 시범지역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연간소득 요건으로 영주(F-5-6)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

\* 단,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중 “국내 전입자” 및 “해외 전입자”는 4년 이상 실거주하여야 함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은 사람을 모두 포함(비고시 국가 동포도 포함)

### 2. 취득 요건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
- (기본소양 요건)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원칙)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등”)을 받아야 함

〈표 2-2〉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등’의 기준

인정 기준	제출 서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3단계 이상 이수)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61점 이상 (4단계 또는 5단계 배정)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 (KLCT) (※ 중간평가 합격증)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⑤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⑥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면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 제주국제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이상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산정특례등록이 된 중증질환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에 장애정도가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 3. 참고 사항

○ 그 외 심사 기준은 일반적인 재외동포 영주(F-5-6) 준용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법령지침정보’ -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체류/사증’의 ‘알기 쉬운 동포업무 매뉴얼’ 참고

○ 재외동포 영주(F-5-6) 중 ①국외 연금, ②순자산, ③연간 교역실적, ④50만 불 이상 투자, ⑤동포단체 대표로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시범지역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한 동포가 연간소득 요건으로 영주(F-5-6) 자격을 신청하더라도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영주(F-5-6)의 소득요건 완화 특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재외동포 영주(F-5-6)의 취득요건 기준\*에 따름

\* (소득요건) GNI 이상, (기본소양) 제출 면제

## V.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와 가족(F-1) 취업제한 완화

### 1. 대 상

○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와 가족(F-1)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가족(F-1) 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은 사람과 가족(F-1)을 모두 포함(비고시 국가 동포도 포함)

### 2. 허가 대상 취업활동

- (재외동포) 재외동포(F-4)에게 제한된 취업활동\* 중 단순노무 직업 41개 및 구인난이 심각한 서비스 직업 5개\*\*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8-70호)

\*\* 호텔서비스원(43221),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43229), 음식서비스종사원(44221), 음료서비스종사원(44222), 골프장 캐디(43292)

#### 【 재외동포(F-4)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취업 제한범위 비교 】

제한 범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재외동포 (F-4)	인구감소지역 재외동포(F-4)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41개 - 고시)	제한	모두 허용
2.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제1~3호)	제한	제한
3.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위해 제한하는 경우(12개 - 고시) [피부관리사 내 발관리사(42231), 목욕관리사(42234), 혼례종사원(42320), 호텔서비스원(43221), 그 외 숙박 시설서비스원(43229), 노래방 서비스원(43232),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43239), 음식서비스 종사원(44221), 음료서비스종사원(44222), 골프장 캐디(43292), 주류서비스종사원(44223), 노점 및 이동판매원(53220)]	제한	5개 서비스업만 허용 [호텔서비스원(43221),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43229), 음식서비스종사원(44221), 음료 서비스종사원(44222), 골프장 캐디(43292)]

- (재외동포 가족) 취업제한 분야(붙임4)를 제외한 단순노무\* 직업 49개

\* 「표준직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91호, 2017.7.3.)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

(참고) 방문동거 체류자격(F-1)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임

### 3. 허가 기준

- (허가절차)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1회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및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1년임
- 자격외활동허가 대상 직업이라도 실제 근무지가 소득활동 가능지역(체류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이어야 함

### VI. 허가조건 위반자 처리 기준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가족(F-1)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조치될 수 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됨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가족(F-1)이 동일 시범지역에 계속하여 실거주(실거주 인정 기준은 p. 4 참조) 하여야 하며, “국내 전입자”와 “해외 전입자”는 2인 이상 가족이 동반거주 하여야 함

### VII. 시행일

- 시행일 : 2022. 10. 4.(화)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재외동포(F-4)와 가족(F-1)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재외동포(F-4)와 가족(F-1) 지침에 따름

**【붙임 1-1】**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 Declaration Form**

※ 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가족 대표 Family Representative	성명 Name In Full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주소 Address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동반가족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of Accompanying Family Members	관계 Relationship	성명 Name In Full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안내]**

**1. 가족대표 지정 기준**

- ①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 등의 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동포와의 가족관계를 근거로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F-1 등)으로 구성된 가족
  - 주된 체류자격(F-4, H-2, F-5 등)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 ② 구성원 모두가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가족
  -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2. 동반가족 신고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2인 이상 동반이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의 가족(F-1) 체류자격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는 동포 가족

**3. 유의사항**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2인 이상 동반이주 및 동반 실거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2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소득활동·재학 가능지역(주소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소득활동이나 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및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Guide to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

**1. Criteria to Designate a Family Representative**

- ① Families consisting of foreign national Koreans on Overseas Korean (F-4), Work and Visit (H-2), or Permanent Resident (F-5) status and the accompanying family members granted with F-1 status on the basis of the family relations
  - One person among the principal status holders (F-4, H-2, F-5, etc.)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 ② Families all of whose members are Overseas Korean (F-4), Work and Visit (H-2), or Permanent Resident (F-5) status holders
  - One person among the family memb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2. Families Required to Report Accompanying Family Members**

- Families that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2 members in the family including a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 status holder will move to and reside in the region
- Families that have an accompanying family member (F-1) of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 status holders

**3. Note**

- Families that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two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cluding a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 status holder will move to and live in the region should actually reside in the permitted region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permission to change the status of stay. Income earning activities and enrolling at school are only allowed in areas where such activities are available (population decreasing regions within the provincial-level self-governing body to which the address belongs), and violations can lead to imposition of fines and cancellation of the status of sta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가족대표) Applicant (Family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

**【붙임 1-2】**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地区特殊类旅外同胞 (F-4) 陪同家属信息确认书**

※ 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请用韩文或英文填写。

가족 대표 家属代表	성명 姓名		국적 国籍		체류자격 滞留资格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外国人登记(在韩居所申报)号码					
	주소 在韩住址		휴대전화 手机号码			
동반가족 인적사항 陪同家属 个人信息	관계 与家属代表 关系	성명 姓名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外国人登记(在韩居所申报)号码	국적 国籍	체류자격 滞留资格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안내]**

**1. 가족대표 지정 기준**

- ①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 등의 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동포와의 가족관계를 근거로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F-1 등)으로 구성된 가족
  - 주된 체류자격(F-4, H-2, F-5 등)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 ② 구성원 모두가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가족
  -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2. 동반가족 신고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2인 이상 동반이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의 가족(F-1) 체류자격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는 동포 가족

**3. 유의사항**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2인 이상 동반이주 및 동반 실거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2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소득활동·재학 가능지역(주소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소득활동이나 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및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地区特殊类旅外同胞 (F-4) 陪同家属相关说明]**

**1. 家属代表指定标准**

- ① 家庭由持同胞类(旅外同胞/F-4、访问就业/H-2、永居/F-5等)滞留资格的人员和因与同胞有亲属关系而取得F-1等滞留资格的外国人组成的：
  - 持同胞类(F-4、H-2、F-5等)滞留资格的人员中指定一人为家属代表。
- ② 家庭全部由持同胞类(旅外同胞/F-4、访问就业/H-2、永居/F-5等)滞留资格的人员组成的：
  - 全部家庭成员中指定一人为家属代表。

**2. 陪同家属申报的对象**

- 以家属两人及以上一同移居为条件取得地区特殊类旅外同胞(F-4)滞留资格的同胞家属；
- 与地区特殊类旅外同胞(F-4)同居，并持其家属(F-1)滞留资格的同胞家属。

**3. 注意事项**

- 地区特殊类旅外同胞(F-4)、以家属两人及以上一同移居和实际居住为条件取得滞留许可的同胞家属，在取得滞留资格变更许可后的两年内，需将在韩住址继续登记在获得许可的地区内，并仅可在其住址所属广域地方自治团体所管辖的“人口减少地区”内从事有收入的活动或者就读学校。如有违反，将会被处违规罚款并被取消滞留资格。

년/年      월/月      일/日

신청인/申请人(가족대표/家属代表) :

(서명 또는 인/签或章)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大韩民国OO出入国外国人厅(事务所、办事处)长 启**

**[붙임 2-1]**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Status of Stay for Overseas Korean and Family Members in Population Decreasing Region**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2쪽 중 1쪽)

성명 Name In Full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verseas Korean Resident No.)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안의 주소 Address In Korea					
근무처 Workplace	근무처 명 Nam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근무처 주소 Address	※ 실제로 근무하는 근무처 주소를 기재 Please write the address of your current workplace			전화번호 Telephone No.
	직업명 Occupation name			직업분류번호 Occupation Classification No.	
	※ 직업명과 직업분류번호는 2쪽 직업분류번호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fer to the Occupation Classification Number on Page 2 for occupation name and the classification number.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와 가족(F-1)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유의사항 안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지정된 근무처에서 허가 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하며, 허가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향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취업활동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Note regarding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tay for F-4 and F-1 status in population decreasing region]**

You are allowed to work at a designated workplace for which you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tay during the permitted period. In case there is change in workplace, you have to obtain the permission again in advance even if it i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ermitted period.

If you fail to obtain a permission when you are required to do so, or are caught seeking employment activities in violation of the permission, you may be subject to a fine and extension of stay may be restricted.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a public servant in charge under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If 'Disagree', the applicant him/herself should submit all the related documents.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seal	Spouse of applicant	signature/seal	Father/Mother of applicant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장/소장	
					가 / 부	

수입인자 첨부란(Rvenue Stamp Her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
---	---------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상 직업 및 직업분류번호 (2쪽 중 2쪽)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 가족(F-1)		
구 분	직업분류번호	직업명	구 분	직업분류번호	직업명
단순 노무 직업 (「표준 직업 분류표」 대분류 9번)	91001	건설 단순종사원	단순 노무 직업 (「표준 직업 분류표」 대분류 9번)	91001	건설 단순종사원
	91002	광업 단순종사원		91002	광업 단순종사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
	92102	이삿짐 운반원		92102	이삿짐 운반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92210	우편집배원		92210	우편집배원
	92221	택배원		92221	택배원
	92229	그 외 택배원		92229	그 외 택배원
	92230	음식배달원		92230	음식배달원
	92291	음료배달원		92291	음료배달원
	92292	신문배달원		92292	신문배달원
	92299	그 외 배달원		92299	그 외 배달원
	93001	수동포장원		93001	수동포장원
	93002	수동상표부착원		93002	수동상표부착원
	93003	제품단순선별원		93003	제품단순선별원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94111	건물청소원		94111	건물청소원
	94112	운송장비청소원		94112	운송장비청소원
	94119	그 외 청소원		94119	그 외 청소원
	94121	쓰레기 수거원		94121	쓰레기 수거원
	94122	거리미화원		94122	거리미화원
	94123	재활용품수거원		94123	재활용품수거원
	94129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129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211	아파트경비원		94211	아파트경비원
	94212	건물경비원		94212	건물경비원
	94219	그 외 건물관리원		94219	그 외 건물관리원
	94220	검표원		94220	검표원
	95110	가사도우미		95110	가사도우미
	95120	육아도우미		95120	육아도우미
	95210	패스트푸드준비원		95210	패스트푸드준비원
	95220	주방보조원		95220	주방보조원
	95310	주유원		95310	주유원
	95391	매장정리원		95391	매장정리원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9	그 외 판매 관련 단순종사원		95399	그 외 판매 관련 단순종사원
	99101	농업 단순종사원		99101	농업 단순종사원
	99102	임업 단순종사원		99102	임업 단순종사원
	99103	어업 단순종사원		99103	어업 단순종사원
	99104	산불감시원		99104	산불감시원
	99211	계기검침원		99211	계기검침원
	99212	가스점검원		99212	가스점검원
	99220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20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31	주차관리원	99231	주차관리원		
99232	주차안내원	99232	주차안내원		
99910	구두미화원	99910	구두미화원		
99920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20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91	환경감시원	99991	환경감시원		
9999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999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999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원	9999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원		
서비스 업	43221	호텔서비스원	※ (참고) 단순노무 직업 중 8개(93003, 93009, 95110, 95120, 99101, 99102, 99103, 99992)는 재외동포(F-4)에게 허용되어 있는 직업이므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활동이 가능함		
	43229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44221	음식서비스종사원			
	44222	음료서비스종사원			
	43292	골프장 캐디			

**[붙임 2-2]**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居住于“人口减少地区”的旅外同胞及其家属的在韩滞留资格外活动许可申请表**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请用韩文或英文填写。(2쪽 중 1쪽/第1页共2页)

성명 姓名				국적 国籍		체류자격 滞留资格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外国人登记(在韩居所申报)号码						휴대전화 手机号码	
여권번호 护照号码		여권 발급일자 护照签发日期			여권 유효기간 护照有效期至		
대한민국 안의 주소 在韩住址							
근무처 工作单位信息	근무처 명 工作单位名称				사업자등록번호 事业者登记证号码		
	근무처 주소 工作单位地址	※ 실제로 근무하는 근무처 주소를 기재 填写实际工作地点				전화번호 电话号码	
	직업명 职业名称				직업분류번호 职业分类代码		
	※ 직업명과 직업분류번호는 2쪽 직업분류번호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职业名称和职业分类代码, 请参考本表第2页职业分类代码说明填写。						
신청일 申请日期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请人签名或盖章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와 가족(F-1)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유의사항 안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지정된 근무처에서 허가 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하며, 허가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향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취업활동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居住于“人口减少地区”的旅外同胞及其家属的在韩滞留资格外活动许可注意事项]**

取得滞留资格外活动许可的人员, 只能在获得许可的工作单位、在获得许可的时间内从事相关工作。若想在所持许可期限届满前更换工作单位, 需要重新取得新的滞留资格外活动许可。应当取得滞留资格外活动许可而未经许可从事相关工作, 或者超出许可范围工作的行为一经发现, 将会被处违规罚款并被限制延长滞留期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信息共同使用同意栏)**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本人同意, 按照大韩民国《电子政府法》第36条规定, 相关负责公务员在办理本业务的必要范围内共同使用行政信息用于查阅并确认相关负责公务员所需确认事项。\*若不同意, 申请人需要亲自提交相关材料。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申请人 签或章 申请人配偶 签或章 申请人父或母 签或章

**공 용 란 (本栏由工作人员填写)**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장/소장	
					가 / 부	

수입인지 첨부란(Revenue Stamp Her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상 직업 및 직업분류번호 (2쪽 중 2쪽)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 가족(F-1)		
구 분	직업분류번호	직업명	구 분	직업분류번호	직업명
단순 노무 직업 (「표준 직업 분류표」 대분류 9번)	91001	건설 단순종사원	단순 노무 직업 (「표준 직업 분류표」 대분류 9번)	91001	건설 단순종사원
	91002	광업 단순종사원		91002	광업 단순종사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
	92102	이삿짐 운반원		92102	이삿짐 운반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92210	우편집배원		92210	우편집배원
	92221	택배원		92221	택배원
	92229	그 외 택배원		92229	그 외 택배원
	92230	음식배달원		92230	음식배달원
	92291	음료배달원		92291	음료배달원
	92292	신문배달원		92292	신문배달원
	92299	그 외 배달원		92299	그 외 배달원
	93001	수동포장원		93001	수동포장원
	93002	수동상표부착원		93002	수동상표부착원
	93003	제품단순선별원		93003	제품단순선별원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94111	건물청소원		94111	건물청소원
	94112	운송장비청소원		94112	운송장비청소원
	94119	그 외 청소원		94119	그 외 청소원
	94121	쓰레기 수거원		94121	쓰레기 수거원
	94122	거리미화원		94122	거리미화원
	94123	재활용품수거원		94123	재활용품수거원
	94129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129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211	아파트경비원		94211	아파트경비원
	94212	건물경비원		94212	건물경비원
	94219	그 외 건물관리원		94219	그 외 건물관리원
	94220	검표원		94220	검표원
	95110	가사도우미		95110	가사도우미
	95120	육아도우미		95120	육아도우미
	95210	패스트푸드준비원		95210	패스트푸드준비원
	95220	주방보조원		95220	주방보조원
	95310	주유원		95310	주유원
	95391	매장정리원		95391	매장정리원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9	그 외 판매 관련 단순종사원		95399	그 외 판매 관련 단순종사원
	99101	농업 단순종사원		99101	농업 단순종사원
	99102	임업 단순종사원		99102	임업 단순종사원
	99103	어업 단순종사원		99103	어업 단순종사원
	99104	산불감시원		99104	산불감시원
	99211	계기검침원		99211	계기검침원
	99212	가스점검원		99212	가스점검원
	99220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20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31	주차관리원	99231	주차관리원		
99232	주차안내원	99232	주차안내원		
99910	구두미화원	99910	구두미화원		
99920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20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91	환경감시원	99991	환경감시원		
9999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999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999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원	9999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원		
서비스 업	43221	호텔서비스원	※ (참고) 단순노무 직업 중 8개(93003, 93009, 95110, 95120, 99101, 99102, 99103, 99992)는 재외동포(F-4)에게 허용되어 있는 직업이므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활동이 가능함		
	43229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44221	음식서비스종사원			
	44222	음료서비스종사원			
	43292	골프장 캐디			

**【붙임 3-1】**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Pledge of Non-Employment in (F-4) Restricted Occupations**

※ 서약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2쪽 중 1쪽)

성명 Name In Full			국적 Nationality		성별 Gend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안의 주소 Address In Korea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8-70호, 2018.3.26.)에서 정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직업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I hereby pledge that I will not engage in employment activities in occupations restricted for overseas Korean (F-4) status holders as prescribed in the Announcement of Scope of Restrictions on Job-Seeking Activities for Overseas Korean (F-4) Status (Ministry of Justice Notification No. 2018-70, March 26, 2018)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1)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3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7-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I confirm I have been informed that violation of this pledge can lead to punishments including imposition of fines and permission to extend the stay not being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Act.

※ 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로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임  
 Yet, overseas Korean (F-4) status holders in the regional-specialized visa pilot regions who have already applied for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tay are excluded.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a public servant in charge under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If 'Disagree', the applicant him/herself should submit all the related documents.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배우자 signature/seal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signature/seal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	--	---------------------------

##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 직업(법무부 고시 제2018-70호 내용 요약) (2쪽 중 2쪽)

###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41개 직업)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2개 직업)

###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41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의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 중 일부 직업을 제외한 **단순노무 직업 41개**

91001	건설 단순종사원	91002	광업 단순종사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	92102	이삿짐 운반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92210	우편집배원	92221	택배원	92229	그 외 택배원	92230	음식배달원	92291	음료배달원
92292	신문배달원	92299	그 외 배달원	93001	수동포장원	93002	수동상표부착원	94111	건물청소원
94112	운송장비청소원	94119	그 외 청소원	94121	쓰레기 수거원	94122	거리미화원	94123	재활용품수거원
94129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211	아파트경비원	94212	건물경비원	94219	그 외 건물관리원	94220	검표원
95210	패스트푸드준비원	95220	주방보조원	95310	주유원	95391	매장정리원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9	그 외 판매 관련 단순종사원	99104	산불감시원	99211	계기검침원	99212	가스점검원	99220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31	주차관리원	99232	주차안내원	99910	구두미화원	99920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91	환경감시원
9999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원								

###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부 직업(12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의 “서비스종사자”(대분류 4) 및 “판매종사자”(대분류 5) 중 일부 직업 12개

42231	피부 관리사 내 발관리사	42234	목욕관리사	42320	흔레종사원	43221	호텔서비스원	43229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43232	노래방 서비스원	43239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	43292	골프장 캐디	44221	음식서비스 종사원	44222	음료 서비스 종사원
44223	주류서비스 종사원	53220	노점 및 이동 판매원						

※ 각 직업별 세부설명은 법무부 고시(2018-70호) 또는 통계청 고시(2017-1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메뉴에서 고시명으로 검색)



##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 직업(법무부 고시 제2018-70호 내용 요약) (2쪽 중 2쪽)

###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41개 직업)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2개 직업)

###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41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의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 중 일부 직업을 제외한 **단순노무 직업 41개**

91001	건설 단순종사원	91002	광업 단순종사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	92102	이삿짐 운반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92210	우편집배원	92221	택배원	92229	그 외 택배원	92230	음식배달원	92291	음료배달원
92292	신문배달원	92299	그 외 배달원	93001	수동포장원	93002	수동상표부착원	94111	건물청소원
94112	운송장비청소원	94119	그 외 청소원	94121	쓰레기 수거원	94122	거리미화원	94123	재활용품수거원
94129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211	아파트경비원	94212	건물경비원	94219	그 외 건물관리원	94220	검표원
95210	패스트푸드준비원	95220	주방보조원	95310	주유원	95391	매장정리원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9	그 외 판매 관련 단순종사원	99104	산불감시원	99211	계기검침원	99212	가스점검원	99220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31	주차관리원	99232	주차안내원	99910	구두미화원	99920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91	환경감시원
9999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원								

###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부 직업(12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의 “서비스종사자”(대분류 4) 및 “판매종사자”(대분류 5) 중 일부 직업 12개

42231	피부 관리사 내 발관리사	42234	목욕관리사	42320	흔레종사원	43221	호텔서비스원	43229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43232	노래방 서비스원	43239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	43292	골프장 캐디	44221	음식서비스 종사원	44222	음료 서비스 종사원
44223	주류서비스 종사원	53220	노점 및 이동 판매원						

※ 각 직업별 세부설명은 법무부 고시(2018-70호) 또는 통계청 고시(2017-1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메뉴에서 고시명으로 검색)

#### 【붙임 4】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가족(F-1) 취업 제한 분야

「기타(G-1) 자격 체류관리지침(G-1-5·6·10·12 제외)」의 '취업제한 분야' 준용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